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23년 8월 30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곽상현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및 세목

명칭	세목
무배당(①) 하나로 연결된(②) 치매간병비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 ※ 동 상품은 상품명칭 중 ① 및 ②안에는 특정단체, 특정직업군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 ※ 다만,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일반형)의 경우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이며,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치매간병비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과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실제 판매하지는 않음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자	여자	
90세 만기	10/15/20년납	20세 ~ 70세	20세 ~ 70세	월납
100세 만기	10/15년납	20세 ~ 75세	20세 ~ 75세	
	20년납	20세 ~ 72세	20세 ~ 75세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영업보험료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고액계약 할인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할인을
500만원 미만 (다만, 49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
500만원 이상	영업보험료의 2.0%

나. 기계약자 추가가입 할인

계약체결시 정상유지되고 있는 당사 보험상품의 기계약자가 이 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의 영업보험료의 1%를 할인하여 영수하며, 제 1회 보험료부터 할인을 적용한다.

다.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금액 감액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보험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가' 및 '나'를 적용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당월분 포함)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할인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회사가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해약환급금 일부지급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반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나. 이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일반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일반형 상품”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하다.

- 다. “일반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과 달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과 동일한 보장 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
- 라.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수준을 “일반형 상품”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수준과 비교하여 안내한다. 다만, “일반형 상품”은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는 상품이다.
- 마. 회사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제 1 호)에 따른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다.

14.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다.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 (1)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교부 및 설명한 것으로 본다.
- (2)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계약을 체결(특약 가입을 포함)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지정대리청구인 자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지정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자가 미지정을 요청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 (3) (2)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경우 계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류 수령을 생략할 수 있다.
- (4) 회사는 가입시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미지정 사유 구분, 모집인 확인, 전산적 재확인, 사후 관리 등 치매로 인한 보험금 청구불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별첨 제 1 호)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
[필수비교 확인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수비교 확인사항]

[기준: 성별 XX 세, XX 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XX 원, 특약제외]

□ 납입보험료 비교

구분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보험료		

□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경과기간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3년				
5년				
7년				
10년				
20년				
30년				
50년				

(별첨 제 2 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3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4 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 청약서의 서식